

2024년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2024년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모집 개요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총 18억원 (과제당 최대 3억원/1년)**
- 지원분야: 약자문제해결형 공모
- 지원기준:
 - 과제 총 연구개발비(지원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현금 10% 이상 필수)
 - **실증완료(성공) 시, 조달청 혁신제품심사 공공성평가 면제 등 후속지원**
- 공모유형: 자유공모(수요처(기관) 선택 (1~5순위))
- 모집기간: **2024.3.12.(화)~2024.4.19.(금) 16시**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eoul.rnbd.kr>)

필독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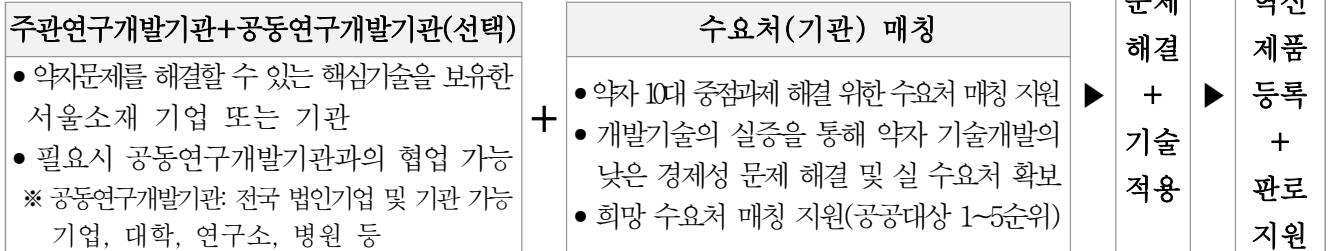
- 기술개발을 통한 **“약자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 **실증완료(성공) 과제 대상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심사신청시 공공성평가 면제 (혁신성평가만 실시)**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 주관기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 필수, 수요처(기관) 선택 (1~5순위)**
- 총 사업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 필수(**현금 부담 10% 포함**)
- 선정 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진입 및 상용화에 어려운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약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동행하는 가치를 확산하고자 함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명 :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 ※ 약자가 겪는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이 약자에게 전달되어 이용·활용됨으로써 실질적 약자가 겪는 문제해결 성과 창출

<일반R&D와 약자문제해결R&D비교>

구분	서울형 R&D 지원사업	약자문제해결형 R&D
목적	▶ 지자체 경쟁력과 경제 성장	▶ 약자의 삶의 질 향상 또는 현안 해결
목표	▶ 기술경쟁력 확보 ▶ 경제적 성과 창출	▶ 약자가 가진 문제해결 ▶ 개발기술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특징	▶ 공급자 위주 연구개발	▶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주체	▶ 산·학·연 연구자 ▶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	▶ 산·학·연 연구자, 지자체, 시민, 기업 등 ▶ 다양한 분야의 사회 경제 전문가 등
결과	▶ 매출, 고용, 논문, 특허 등 연구 산출물 기술개발	▶ 약자가 가진 구체적인 문제 해결 - 약자를 위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 - 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시스템 구축

■ 지원과제 : 약자동행지수 6대 영역 10대 중점과제 및 기타 과제

영역	중점 과제
생계·돌봄	1.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으로 생계 사다리 복원
	2. 돌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회복력 제고
주거	3. 주거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
의료·건강	4. 소외계층 건강격차 완화
	5. 정신건강 취약계층 건강 회복 촉진
교육·문화	6.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확대
	7. 문화지원 확대로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
안전	8.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선제 대응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9.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사회통합	10. 시민 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
기타	11. 기타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수요조사 사례 참고

〈기타과제_수요조사 사례〉

연번	실증처	세부문제	해당약자 중점과제
1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보행패턴 분석을 통한 개별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건강한 생활 유도)	4
2	시립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의사소통 약자의 소통권리 증진과 주도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전자식 보완대체의사소통(AAC)활용	4
3	성동구 스마트도시과	시각장애인 엘리베이터 이용 불편사항 개선 및 편의도모	9
4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양방향 수어통역 어플	4
5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적응을 위한 VR 가상 콘텐츠 활용 기술훈련 환경 조성	11
6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청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무선 청취 스마트 시스템	4
7	120 다산콜재단	자동번역 솔루션을 활용한 다국어 상담	10
8	서울시 복지재단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홈 설계와 통합관계체계 구축	8
9	서울시 미래첨단 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문자인식 및 음성변환 기반 안내 서비스 개발	9

※ 첨부1의 수요과제 조사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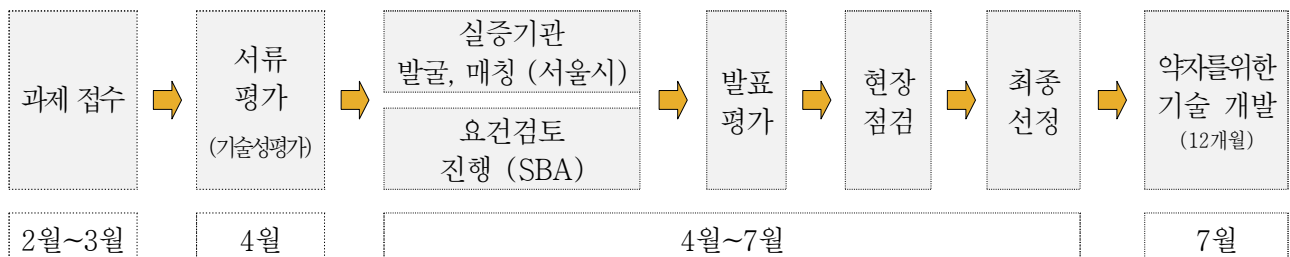
■ 지원개요

- 지원기간: 과제당 최대 1년 이내(2024. 7. 1. ~ 2025. 06. 30.)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
- 지원분야: 약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전 분야
- 지원내용: 실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의 비용
- 지원규모: 총 1,800백만원, 8개 과제 내외(최대 3억원)
- 지원조건 세부사항

구 분	일반분야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서울 소재 기업 (개인, 법인) - 공동연구개발기관: (선택)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지역무관) - 수요처(기관): (선택) 서울 소재 수요처(기관) 1개 이상 신청 선택 (5순위까지 신청 가능)
지원분야	- 각종 기술을 적용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핵심기술을 가진 전 분야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 활용)
지원규모	총 8개 과제 내외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3억원 이내 - 과제 총 연구개발비(지원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현금 의무부담 * 기술료 비대상
지원기간	과제당 최대 1년 ('24. 7. 1. ~ '25. 6. 30.)
과제요건	<u>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의 기술을 실용화·사업화 하고자 하는 과제</u> *TRL 6단계 :시작품 단계 파일럿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단계 *TRL 7~8단계:실용화 단계 7단계 - 신뢰성평가 및 수요 기업 평가, 8단계 -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TRL 9단계 :사업화 단계
공모유형	약자문제해결형 공모

※ 동일 과제 타 R&D 지원사업에 중복선정 불가

○ 추진 일정



※ 실증기관 매칭 및 사전검토 조건 충족 시, 발표평가 진행 (매칭 실패, 검토조건 미충족 시 탈락)

2. 신청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본점 또는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가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병(병원): 「의료법」 제3조3의 종합병원(지역 제한 없음)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3.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실증자금 지원
-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 및 실증기간 + 6개월
 -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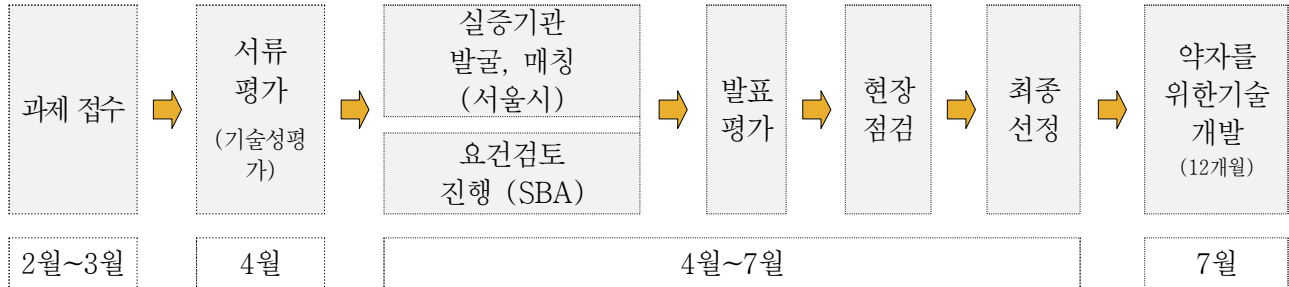
▣ 지원 기준

- 전체 연구개발비는 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현물 또는 현금 가능)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필수

구분	전체 연구개발비(가)	시지원연구개발비 (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액(다)	현금(라)	현물(마)
구성 기준	(나)+(다)	(가)의 75% 이하	(가)의 25% 이상	(다)의 10% 이상	(다)-(라)
(예시)	266,667,000원 (100%)	200,000,000원 (75%)	66,667,000원 (25%)	6,667,000원 (2.5%)	60,000,000원 (22.5%)

4.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선정평가

① [서류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2배수 내를 기관 연결 대상 과제로 추천

$$\text{서류평가 평점} = \frac{\text{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평가표(서류평가)

구분	평가항목
약자문제해결 기술의 적정성 (40)	▶ 기술개발의 창의·도전성 및 차별성
	▶ 기술개발 내용·전략의 적정성 및 방법의 구체성
	▶ 세부과제별 수행역량
	▶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
	▶ 기술개발 연구윤리
실행가능성 및 파급효과 (40)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기술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 기술개발의 기술적 파급효과
약자문제 해결 타당성 등 (20)	▶ 약자문제의 중요성(약자 삶의 질 저해도, 사회적 심각도)
	▶ 약자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
	▶ 사용자 참여 및 계획의 타당성
	▶ 약자 문제해결의 실증처(기관)의 적정성

②-1 실증기관 매칭

○ 수요처(기관) 범위 (해당 제품, 서비스 실증에 적정한 서울 소재 기관)

- ▷ 아래 공공기관 중 서울 소재 공공기관에 한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자기관
 - 공기업(공사 및 공단 등),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의료법 3조3에 의한 종합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보건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기업이 아래 누리집 주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1.실증장소 2.담당기관(부서)**를 선택하여 기입하고 (1~5순위) 지정한 곳을 토대로 매칭 지원

구분	누리집 주소
서울시 본청	http://org.seoul.go.kr/org/orgChart.do
서울시 본부 및 사업소	https://org.seoul.go.kr/bonbu/orgChart.do
서울시 공사·출연기관	https://www.seoul.go.kr/seoul/pubcorp.do
서울시의회	https://org.seoul.go.kr/smc/orgChart.do
자치구	https://www.seoul.go.kr/seoul/autonomy.do
서울특별시 교육청	https://www.sen.go.kr/www/office/org/org_1.jsp

* 선정되더라도 수요처(기관) 매칭 기간 내 실증장소 매칭이 성립되지 않는 기업은 최종 지원 불가

** 필요시, 과제 신청기업과 실증 대상기관 간 오프라인 매칭 지원 진행

②-2) 요건검토

-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기관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통,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복성	주관 연구개발 기관, 주관 연구책임자	-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
	과제	-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인건비계상률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의무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 및 기업 상태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채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채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채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채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채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채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제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기업인 경우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부채비율·자본잠식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주채권은행에 문의) ③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①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②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기타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연구개발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

※ 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③ [발표평가] 매칭된 수요처(기관)에서 진행될 실증계획서 및 추가 발표자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사업성(기술성, 시장성) 포함 **실증 가능성과 파급력 중심**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2배수 내 ‘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로 의결

$$\text{발표평가 평점} = \frac{\text{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평가표(발표평가)

구분	평가항목
약자문제해결 기술의 적정성 (30)	▶ 기술개발의 창의·도전성 및 차별성
	▶ 기술개발 내용·전략의 적정성 및 방법의 구체성
	▶ 세부과제별 수행역량
	▶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
	▶ 기술개발 연구윤리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30)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기술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 기술개발의 기술적 파급효과
약자문제 해결 타당성 등 (20)	▶ 약자문제의 중요성(약자 삶의 질 저해도, 사회적 심각도)
	▶ 약자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
	▶ 사용자 참여 및 실증계획의 타당성
	▶ 약자 문제해결의 기대효과 적정성
실증가능성 및 파급력 (20)	▶ 기술적 실현 가능성, 자원확보, 절차 및 예산 사용 계획
	▶ 개발 기술이 경제, 환경, 학문 등에 끼치는 영향력 등

■ 현장점검 (필요시)

-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최종 선정 대상 후보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조정 위원회에 평가할 지원대상 후보군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3.12.(화)~2024.4.19.(금) 16시**

-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로그인→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등록기간 확인 필요)
- ※ 세부 사업별 마감일은 [붙임]의 각 세부사업별 공고내용 참조

■ **신청방법**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 시 구비서류: 단계별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온라인 업로드(한글 또는 PDF)

구분	서 식 명	대상		제출 형태
		주관	공동	
단계1: 사업 신청 시				
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O	X	한글 또는 PDF
전자 등록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주관연구책임자)	O	X	시스템 입력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주관연구책임자)	O	X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주관연구책임자)	O	X	
붙임 [해당시]	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O	O	한글 또는 PDF
단계2: 발표평가 추천대상(서류평가 통과) 시				
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O	X	한글 또는 PDF
서류	연구개발기관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O	O	PDF
서류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 ※ 국제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	O	O (비영리X)	PDF
붙임	[별첨1] 연구장비시설 구입 계획서	O	O	한글 또는 PDF
단계3: 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발표평가 통과) 시				
서류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공동연구책임자)	X	O	PDF
서류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및 연구책임자)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	O	O	PDF
서류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공동연구책임자)	X	O	PDF
서류	실증계획서 (실증기관과의 협의된 내용의 계획서)			
붙임 [해당시]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	O	O	한글 또는 PDF

※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

○ 신청 절차



<신청 시 접수요령>

① 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② SBA 홈페이지(<https://www.sba.seoul.kr/>)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진행
 -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 ※ 주관연구책임자 개인명으로 과제가 신청되므로, **개인회원**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

③ 종합관리시스템(PMS) 접수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eoul.rnbd.kr/>)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PMS 로그인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통합공고 중 원하는 사업명을** 클릭
- 기본정보, 과제분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연구개발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조회 →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제출 후 수정 불가**)

6.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적용
-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서울경제진흥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담당자 : SBA 기술혁신팀 박유선 책임(namutegi@sba.kr, 02-2222-3808)
서선영 선임(sally@sba.kr, 02-2222-3817)

[붙임1] 우대가점 목록

해 당 사 항	가 점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인 경우(중복 가점 가능) ☞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	각 1점
②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 증빙서류 : 하이서울브랜드 확인서	1점
③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은 경우 ☞ 증빙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점

※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가점 인정 불가

※ 우대가점은 선정평가 중 발표평가 단계의 종합평점에 반영